

의안번호	제338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도유(행정)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7월 4일

# 도유(행정)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

의안 번호	33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7월 4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 우수 인재 발굴·양성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도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도유(행정)재산 사용료 감면

- 대 상: 충청북도가 출연한 비영리 기관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
- 사용기관: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
- 재산위치: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은행상야로 425, 자치연수원
- 사용면적: 건물 527㎡ ※ 도민교육관 총 면적 2,427㎡
- 감면내역: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
- 적용시기: 2023. 7. 26. ~ 2028. 6. 25.
-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
  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제1항 제4호
  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(사용료 감면)

### 3. 참고사항

#### □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현황

- 개 소 일: 2023. 1. 1.
- 설립목적
  - 지역 우수 인재발굴·양성과 평생교육진흥 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충청북도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
- 주요사업
  - 충청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
  - 우수인재 발굴사업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
  -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·연구·조사 등
- 인 원: 20명(원장 1, 사무처장 1, 직원 18)

#### 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# 《관련 법령 발취》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, 2022. 11. 15.>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
3.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## 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7조(사용료 감면)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(年數)를 초과할 수 없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(이하 “지식재산”이라 한다)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. <신설 2015. 7. 20.>
-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. 다만,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0.>
-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,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 <개정 2015. 7. 20., 2022. 4. 20.>

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0., 2016. 7. 12., 2020. 12. 22., 2022. 4. 20.>

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  2.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
- 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

## □ **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**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 우수 인재 발굴·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격)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.

제3조(등기)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②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조(사업)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충북인재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
2. 충북도민 및 도민자녀 장학사업
3. 과학·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
4. 충북인재양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
5.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
6.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·연구·조사·컨설팅
7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

- 8. 문해교육센터 운영
- 9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·위탁하는 사업
- 10.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

제5조(임원 등)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, 임원의 정수,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6조(조직 및 운영)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.

② 원장은 진흥원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진흥원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④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토록 할 수 있다.

⑤ 진흥원에는 「평생교육법」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.

⑥ 그 밖에 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7조(재산 및 기금의 조성)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도와 시·군의 출연금
2. 개인·기관·단체의 기부금
3. 기금의 운영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제8조(출연)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

제9조(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) 진흥원의 기금은 장학 및 인재양성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10조(정관의 변경 등) 정관의 변경 등 진흥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,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(회계연도)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제12조(사업계획 승인 등)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3조(결산서 제출 등)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진흥원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한다.

제14조(지도감독) ① 도지사는 진흥원운영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업무,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·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제15조(진흥원에 대한 제재) 도지사는 진흥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여 재산 및 기금을 사용하였을 때
2.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
3. 도지사의 승인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

제16조(운영규정) 이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